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4

발의연월일: 2020. 7. 27.

발 의 자: 송옥주·서삼석·박찬대

유동수 · 임종성 · 안호영

박용진 • 정춘숙 • 박 정

김경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상 소외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던 피해자가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음. 현재 성폭력범죄와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공판절차에 출석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송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인권보장과 2차 피해 방어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노동착취, 학대 범죄사건 등은 초기부터 피해 자를 위한 법률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피해자국 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장기간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장애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장애인학대범죄에까지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9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1항 중 "제59조의11"을 "제59조의12"로 한다.

제59조의9부터 제59조의14까지를 각각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5까지로 하고, 제5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9(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장애인 학대사건"으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장애인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장애인"으로 본다.

제85조의2 중 "제59조의11제4항"을 "제59조의12제4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제59조의9제1호"를 "제59조의10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9조의9제2호"를 "제59조의10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9조의9제2호의2"를 "제59조의10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59조의9제2호"를 "제59조의10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59조의9제7호"를 "제59조의10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9조의9제8호"를 "제59조의10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 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 -----제59조의12----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 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 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9(피해장애인에 대한 변 호사 선임의 특례)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 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장애인 학대사건"으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장애인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장애인"으로 본다. 제59조의9(금지행위) (생략) 제59조의10(금지행위) (현행 제59 <u>제59조의10</u>(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생 략)

<u>제59조의11</u>(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 (생 략)

<u>제59조의12</u>(사후관리 등) (생략)

<u>제59조의13</u>(피해장애인 쉼터) (생략)

<u>제59조의14</u>(장애인학대 등의 통 보) (생 략)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 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 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 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 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 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 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 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조의	9와	같음)

제59조의11(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현행 제59조의10과 같음)

제59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 (현행 제59조의11 과 같음)

<u>제59조의13</u>(사후관리 등) (현행 제59조의12와 같음)

<u>제59조의14</u>(피해장애인 쉼터) (현 행 제59조의13과 같음)

제59조의15(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현행 제59조의14와 같음) 제85조의2(비밀 누석 등의 금지)

<u>제59조의12제4항</u>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10제1호 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다. 1. 제59조의10제2호-----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 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10제2호의2-----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 3. 제59조의10제2호-----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59	<u>)조의9제7호</u> 에	해당하는

3. (생략)

행위를 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ス	1	5	9.	조	2	긔	1	0	ス	1	7	-	<u>Ş</u>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3. (현행과 같음)
- ⑤ <u>제59조의10제8호</u>-----